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소방위"를 각각 "소방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영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으로, "이상,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 보유자,"를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을 "이상인 자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방법)"을 "(특별구조훈련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속직원의 특별구조교육훈련"을 "소속 구조대

원의 특별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연간"을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으로,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특별구조훈련의 성과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 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교육훈련과정"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구조교육훈련"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항공구조교육훈련 (제18조와 관련)**"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교육 훈련과정	특수 항공 구조	4시간 이상	○ 사고유형별(육상·수상·산악등지) 항공인명구조 이론 및 실습 ○ 헬기 내 행동방법 및 헬기 유도(수신호) 등 ○ 항공구조 장비소개 및 사용방법	○ 대형·특수재난발생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긴급구조체제 확립 ○ 항공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및 각종 사고 대처요령 체계화 ○ 육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 인명구조 활동 전개
--------------	----------------	-----------	--	--

별표 3의 제목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제16조 및 제19조 관련)**"을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교육과정	인정시간	비고(연간)
특별 구조 훈련	교육기관 (위탁교육 포함)	[별표1] 1.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수료시간	수료 시
		[별표1] 2.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수료시간	수료 시
		온라인(사이버)	1차시당 0.5시간	연 최대 10시간
	시·도본부 및 소방서	[별표1] 2.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최대 6시간	연 최대 30시간
구조 관련 특별 교육	현장안전관리교육, 감 염방지교육,	집합(대면)	교육시간 × 1	연 최대 8시간
		온라인(비대면)	교육시간 × 0.5	연 최대 4시간

	특별 정신교 육,기타 특 별교육			
세미나 참석 등	탐색·구조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	참여	참여시간 × 1	연 최대 4시간 (공문 및 참석결과 자료제출)

특 별 구 조 훈 련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앞쪽)

구 분		기 준	비고
1. 인명구조 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 13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 135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 18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등반·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구분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2. 전문 교육 훈련 과정 및 외부 기관 구 조 관련 교육 훈 련과정	수난구조	4시간 이상 ○ 동계, 급류, 깊은물 등 관련 - 잠수 및 수중탐색인명구조훈련 -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 요령 습득 ○ 물적응 및 방향찾기 및 비상시 응 급처치 등	○ 동계, 급류, 깊은물 등 관련 - 수난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 의 신체적 적응 -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 여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구조	4시간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 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 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대응 훈련	4시간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 시 대응훈련 ○ 「CBRN 테러 대응팀」 운영장비 사 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인명 구조	4시간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끝 어울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 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 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구조 장비교육	4시간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전문 운용요원 확보로 장비성능 100% 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 화	
	도시탐색 구조	4시간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 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 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 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기타	4시간 이상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구조 교육훈련 ○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 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	○ 지역별 맞춤형 구조훈련을 통한 현 장대응력 강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훈련 대상) ① 일상교육훈련 및 <u>특별교육훈련</u> 의 대상은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u>소방위</u>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훈련 대상) ① ----- ----- <u>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u> ----- ----- <u>소방경</u> ----- ----- -----.
② 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은 영 제17조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u>소방위</u>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구조대원으로 한다.	② ----- ----- ----- <u>소방경</u> ----- ----- ----- -----.
제4조(교육훈련 계획) ①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교육훈련 계획) ①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 ① 구조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 ① ----- -----.
1. <u>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u> 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	1. <u>영 제6조제1항제3호</u> ----- ----- -----

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2. ~ 5. (생략)

②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 보유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구조대원

2. ~ 5. (현행과 같음)

② -----

----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
정 등) ① -----

---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 -----
-----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이상인 자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구조훈련의 방법) ①

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구조교육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소속직원의 특별구조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구조교육훈련 중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구조대원의 당해 연도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는 20시간, 10개월 이상은 40시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 특별구조훈련-----

-----.

② -----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
-----.
--- 특별구조훈련 -----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
-----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
-----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

당해 연도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④ (생략)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기관, 외부위탁교육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③ (생략)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의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구조훈련의 성과측정)

특별구조훈련-----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공구조훈련-----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

-----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

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④ (생략) 제20조(준용) <u>구조교육훈련</u>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u>2024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준용) <u>구조대원의 교육훈련</u>----- ----- ----- -----. 제21조(재검토기한) ----- ----- ----- ----- <u>2025년 7월 1일</u> --- ----- ----- <u>6월 30일</u>----- ----- -----.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조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6조에 따라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항공구조대원”이란 영 제17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 대상) ①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은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으로 한다.

② 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은 영 제17조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구조대원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 계획) ①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 ① 구조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2. 영 제17조에 따라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와 관련된 교육훈련
3.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교육훈련
4.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구조훈련
5.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훈련

②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대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훈련을 항공구조대원은 제1항제5호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조대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탐색·구조 전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UN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주관하는 구조관련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의 평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 계획에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구조대원 자격관련 교육훈련) ①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4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
2. 일반구조훈련 : 구조기술·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3. 특별구조훈련 : 규칙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구조관련 교육훈련

② 영 제17조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와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
2. 전문기술훈련 : 항공 구조·구급 기술 및 항공구조·구급장비조작 요령

③ 신입교육과정에서 4주 이상의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장 일상교육훈련

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2.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3.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4.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5.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제11조(일상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조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조대장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조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구조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구조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4.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구조훈련

제14조(특별구조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5. 해외재난시 국제구조대 활동에 대비한 국제구조에 관한 교육훈련
6.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7.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8.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9.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10.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특별구조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구조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구조훈련 중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

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7조(특별구조훈련의 성과측정) 특별구조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기관, 외부위탁교육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항공구조훈련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①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5.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6.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③ 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준용)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간 인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6조는 이 규정 시행 전 실시한 2025년 구조대원 교육훈련에도 적용한다.